

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70호

관보 제19653호(2019. 12. 2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45호(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 1. 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제19653호(2019. 12. 20.) 318쪽, 위에서 32번째 행에 내용 추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5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현대건설(주) (박동욱) ② 삼표피앤씨(주) (정인철)

나. 전화번호 : ① 02-746-0102 ② 02-6261-5228

2. 명칭 : 단부 보강형 프리캐스트 더블 월(Precast Double Wall)을 이용한 복합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 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단부보강형 PC(프리캐스트) 더블월’은 두 개의 얇은 PC 패널이 이격 공간(중공부)을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철물로 연결하고, 부재 단부에서 두 PC 패널을 보강 연결 철물로 연결 보강하는 PC 부재이다. 공장 제작된 ‘단부보강형 PC 더블월’은 현장 조립을 마친 후, 중공부에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 구조체와 일체화하는 ‘복합화 공법’이다. ‘단부보강형 PC 더블월 복합화 공법’은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벽체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PC 더블월 부재의 접합부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 우수한 사용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공난이도 등으로 기존 공법(RC 및 기존 PC 포함)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벽체 단부 보강 공정을 공장에서 정밀하게 구현 가능하므로 높은 품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범위>

공장에서 두 개의 PC 패널 사이에 현장 타설을 위한 중공부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두 PC 패널 단부는 연결 철물로 보강하는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체와 일체화하는 공정으로 완성하는 ‘단부보강형 PC 더블월 복합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등록일 : 2019년 12월 19일